

■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4. 11. 15.>

내화구조의 성능기준(제3조제8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(단위 : 시간)

구성 부재 용 도		벽								보 기동	바닥	지붕 지 붕 틀			
		외벽				내벽									
		내 력 벽	비내력벽		내 력 벽	비내력벽									
용도구분	용도구모 총수/최고 높이(m)		연소우려 가 있는 부분	연소우려 가 없는 부분		경계벽	승강기 · 계단 실의 수직벽								
일반 시설	제1종 균质地 시설, 제2종 균质地 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위락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(정비공장 제외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교정 및 군사 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묘지 관련 시설, 관광 휴게 시설, 장례시설	12/50	초 과 이 하	3 2	1 1	0.5 0.5	3 2	2 1.5	2 1.5	3 2	2 2	1 0.5			
			4/20 이하												
주거 시설	단독주택, 공동주택, 숙박시설, 의료시설	12/50	초 과 이 하	2 2	1 1	0.5 0.5	2 2	2 1	2 1	3 2	2 2	1 0.5			
			4/20 이하												
산업 시설	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, 자연순환 관련 시설	12/50	초 과 이 하	2 2	1.5 1	0.5 0.5	2 2	1.5 1	1.5 1	3 2	2 2	1 0.5			
			4/20 이하												

2. 적용기준

가. 용도

- 1)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

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.

- 2)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3)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에 따른다. 다만, 승강기탑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나. 구성 부재

- 1)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.
- 2)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.
- 3) 내벽 중 비내력벽인 경계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.

다. 그 밖의 기준

- 1)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·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2)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.